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

배주미** · 김영화** · 김범구** · 정익중***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취약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위하여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델파이 조사에서는 총 72명의 현장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향후 취약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14개 항목 75개의 문항의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가 요약되었으며, 정책적 측면에 있어 자립지원 정책강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후관리 강화, 자립지원 실무자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자립정착금 지원의 개선, 주거공간 지원 확대와 개선, 법률 및 의료 지원 강화, 친부모 관련 대응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자립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체계적 구축 및 운영,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의 강화, 학업지원의 강화, 사회기술 역량 함양, 경제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자립지원, 취약 아동청소년, 델파이 조사

* 본 연구는 2010년도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연구보고서 내용의 일부분을 발췌 수정하였음.

**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화여자대학교

I.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들어 ‘출생에서 자립까지’ 아동청소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전연령 단계에서 다음 연령까지 정책효과의 지속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다음 세대를 이어받아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갈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그 연속성 상에서 논의되고 정책이 정립되어야 하며, 특히 그 관심 영역이 청소년기의 문제로 끝나기 보다는 이들이 무사히 ‘건전한 성인기’로 이행되어 가느냐의 ‘자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자립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으로 그 의미에서 자율성,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립(self-reliance)은 자기충족(self-sufficiency)적이고 독립(independent living)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Maluccio et al., 1990), 자기충족은 외부의 도움이나 협조 없이 자기 스스로 충족한 상태라는 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립에 대한 정의들은 자립이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의 자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심리적인 욕구의 충족을 포함함을 뜻한다. 특히 ‘개별적 독립’이라는 의미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와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경제적 독립 상태에 대한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신혜령, 2001).

자립능력을 가지는 것이 모든 청소년에게 중요한 발달과업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건전한 성인기로의 이행 및 ‘자립’의 문제와 관련되어 어려움이 시사되는 대상은 그들의 개인적, 환경적 취약성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발달과정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취약 아동청소년’들로 보여진다. 즉,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비롯하여, 아동복지 시설 내 아동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가출청소년 등의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학업부족, 심리적 문제, 지원체계의 부족 등으로 인해 다양한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건강한 성인으로 이행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시사된다. 따라서 이들 취약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해 이들의 자립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 도움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신혜령, 2001; 강현아 외, 2009).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복지의 패러다임이 소극적 현금지원에서 적극적인 자립정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노충래, 2001; 정익중, 2007). 특히 미국에서는 가출 및 노숙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위탁보호자립지원법(Foster Care Independence Act), 학교-직업사회 기회이행 법(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등의 법령 하에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출청소년들이 24개월간 거주하면서 다양한 자립생활기술을 익히는 전환생활프로젝트(Transitional Living Project), 위탁가정으로부터 독립한 청소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훈련바우처(Educational Training Voucher) 제도, 저소득 학업중단청소년들에게 주택 건설을 통해 대안교육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유스빌드(Youth Build)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취약 아동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서적, 교육적, 경제적 및 주거지원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인기로 순탄하게 이행하여 자립을 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등에 이러한 청소년자립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디딤씨앗통장 등의 경제지원, 자립생활관을 통한 주거지원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서비스 등을 통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등도 최근 시작되고 있으며, 양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자립준비 프로그램’과 학업중단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두드림존 프로그램’ 등도 효과적으로 평가되고 있다(신혜령 외, 2008; 권해수 외, 2008).

자립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자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 외국의 자립지원 정책을 탐색하는 연구가 일부 발표되었다(노충래, 2001; 정익중, 2007; 원지영, 2008; 김미숙, 2009).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양육시설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들 청소년에 대한 지원모색을 시도하였을 뿐,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가정 외 보호 중인 아동청소년 외에도 실제 자립과정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게 될 학업중단 청소년, 가출청소년 및 저소득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정책적 모색도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이들 취약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환경적 지원을 포괄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체계적인 자립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노충래, 2001; 신혜령 외, 2008).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하여 크게 자립에 기초를 이루는 심리, 정서, 신체의 건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직업 유지 및 지속적인 학업 등의 자립지원 서비스 영역이 제안되었다(신혜령, 2001; 박은선, 2004; Cook, 1986; Pasztor et al., 1986; Maluccio et al., 1990; Nollan et al., 2000; Casey Family Program, 2001).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스스로의 독립상태를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성 기술, 대인관계기술, 지역사회 자원활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서비스 영역은 가정 내 지원이 어려운 양육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청소년과 학교 내 지원이 어려운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에게 다양한 종류의 자립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취약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지원 정책 방안과 구체적인 자립지원 서비스 내용에 대한 현실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의 취약 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연구들은 취약 청소년의 자립에 있어 경제적 안정성, 거주 안정성과 심리적 안정성, 사회적 지지 등의 광범위한 변인들이 자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강조해왔으므로(이혜은·최재성, 2008; 정선욱, 2010) ‘자립’이라는 장기적, 총체적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설보호청소년을 중심으로 마련되기 시작한 자립지원방안을 기초로 하여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가출 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 등의 취약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특히 이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지원들의 공통적이고 차별적인 지원 내용 및 인프라, 서비스 내용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립지원에 대한 법,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취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탐색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장전문가들이 자립지원 방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방안에 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 자립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상황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책대안에 대한 탐색이 어려울 때,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주관적·직관적 방법이다(노승용, 2006). 델파이 조사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집·교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특히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여 델파이 조사에 참여하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환류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전문가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취약 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지각하는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취약 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가들은 어떠한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II.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델파이 1차 조사를 위해 선정된 현장전문가들은 총 163명이었다. 우선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서울시대안교육지원센터,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통해 취약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에 근무하는 실무자들 중 아동청소년 자립과 관련된 근무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자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실무자들을 추천받았다. 각 집단별로 15명에서 33명의 현장전문가들을 추천받았으며,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연구자 25명 역시 연구대상으로 포함시켰다.

163명의 현장전문가에게 1차 델파이 조사를 발송한 결과 총 72명의 현장전문가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현장전문가의 집단 별 분포를 살펴보면, 양육시설이 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위탁 14명, 그룹홈(공동생활가정) 13명, 쉼터 10명, 청소년상담지원센터 9명, 연구자 5명, 대안학교 3명으로 나타났다. 3차 조사까지 모두 참여한 인원은 총 56명으로 각 집단별 탈락율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44%로 가장 높았으며, 가정위탁센터 집단이 33%, 양육시설 집단이 28%, 그룹홈 집단이 8%, 쉼터 집단이 2%, 대안학교 및 연구자는 모두 0%로 나타났다(<표 1>).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자가 19명, 여자가 53명으로 여자가 많았으며, 연령은 25세~30세가 16명(22.2%), 31세~35세가 14명(19.4%), 36세~40세가 11명(15.3%), 41세~45세가 13명(18.1%), 46세~50세가 7명(9.7%), 51세 이상이 10명(13.9%), 무응답 1명(1.4%)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학력은 학사학위 소지자가 45명(62.5%), 석사학위 소지자가 20명(27.8%), 박사학위 소지자가 5명(6.9%), 무응답 2명(2.8%)으로 분포하였다. 현장전문가들의 실무 경력은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21명(29.2%)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 7년 미만이 13명(18.1%), 10년 이상이 15명(20.8%), 7년 이상 10년 미만이 10명(13.9%), 1년 이상 3년 미만이 10명(13.9%), 1년 미만이 3명(4.2%)으로 나타났다.

<표 1> 델파이참여자 집단 별 분포

구분	양육 시설	가정 위탁	그룹 홈	쉼터	상담지원 센터	대안 학교	연구자	총합
1차 참여자(N)	18	14	13	10	9	3	5	72
2차 참여자(N)	17	14	13	10	8	3	5	70
3차 참여자(N)	13	10	12	8	5	3	5	56

2. 연구도구

델파이 조사를 위해 3종류의 조사도구가 제작되었다. 첫째, 델파이 1차 조사 질문지는 “향후 취약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의견을 자유기술하는 개방형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제 1차 델파이 설문지가 구조화, 조직화, 세분화 되어 있을 경우 응답자의 반응범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서영인, 2006), 개방형 질문으로 제시하여 현장전문가들이

자립 지원 방안에 관해 가진 다양한 의견들이 수집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델파이 2차 조사 질문지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의견들을 통합하여 제작하였다. 2차 질문지는 유사한 문항끼리 영역을 나누고, 각 문항에서 나타난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5점: 매우 동의함)로 평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델파이 3차 조사 질문지는 2차 델파이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각 문항의 평균 및 사분위범위를 제시하여 현장전문가들의 최종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2차 조사 질문지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질문지에 2차 조사 결과 나타난 평균을 제시하고, 사분위범위를 리커트 척도 상에 음영으로 표시하여,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 분포를 고려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델파이 조사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2차, 3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는 현장전문가들에게 e-mail로 보내졌고, 다시 e-mail 답장을 통해 의견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델파이 조사 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에 기술된 바와 같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총 72명의 현장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70명, 3차 델파이 조사에는 56명이 참여하였다.

<표 2> 델파이 조사 내용 및 응답률

구분	조사기간	내 용	배포 형태	표집 인원	응답 인원	응답률
제1차 델파이	2010. 3. 26-4. 8	개방형 질문형태의 자립지원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e-mail	163명	72명	45%
제2차 델파이	2010. 4. 16-4. 27	1차 델파이 조사결과로 나온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	e-mail	72명	70명	98%
제3차 델파이	2010. 4. 30-5. 13	2차 델파이 조사결과에 기초한 최종 의견 수집	e-mail	70명	56명	80%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1, 2, 3차 델파이 조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되었다. 첫째, 전문가들에게 델파이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종합한 결과 총 400여개의 의견이 수집되었다. 수집된 의견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한 후, 연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비슷한 의견끼리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총 75개의 의견을 도출하였다. 75개의 의견들을 기존의 자립지원 서비스 영역에 관한 연구와, 자립준비와 관련된 척도 등을 참고하여 영역을 구성한 뒤 각 의견을 유사한 영역이나 항목으로 분류하여 총 1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2차 설문 결과는 5점 리커트 상에 나타난 응답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에는 SPSS 12.0버전이 활용되었다. 셋째, 3차 설문 역시 2차 설문 자료 분석과 같은 방식으로 회수된 설문지의 기술통계치를 SPSS 12.0버전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 과

1.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현장전문가들에게 델파이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을 종합한 결과 총 400여개의 의견이 수집되었다. 비슷한 의견을 범주로 분류한 결과, <표 3>과 같이 최종 75개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자립지원 정책 강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후관리, 자립지원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자립정착금 지원의 개선, 주거공간 지원의 확대 및 개선, 법률·의료 지원 강화, 친부모 관련 대응 강화,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체계 구축 및 운영,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 강화, 학업지원 강화, 사회기술 역량 함양, 경제교육 강화, 직업준비 및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 등에 관한 의견으로 나뉘었다.

<표 3>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영역	내용
1) 자립지원 정책 강화	• 아동청소년관련법에 자립지원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총괄 운영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 자립지원 유관기관(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상담지원센터 등)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부처 내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 체계적인 자립준비를 위한 장기적 자립지원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 기업에서의 취약 아동청소년의 채용비를 의무화, 이에 따른 세제혜택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 • 자립지원 정책 홍보를 통한 일반인들의 자립지원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 취약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후관리	• 자립지원과 관련된 통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 시설 퇴소 이후, '사례관리 의무화' 법령이 추가되어야 한다. • 퇴소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3) 자립지원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진로 및 상담 전문가)의 확대 및 충원이 필요하다. • 자립전담요원(아동양육시설)의 업무집중화가 필요하다. • 자립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급여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4) 자립정착금 지원의 개선	• 보호유형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 차등화를 해소하여야 한다. • 자립정착금을 현재수준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자립정착금 지원이 아동시설뿐 아니라 청소년 시설(예, 쉼터)의 청소년들에게도 확대되어야한다. • 아동발달계좌(CDA) 사업 강화 및 확대를 위한 적극적 홍보와 후원자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 자립정착금 지원 시,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지급방법을 다양화(일시지급, 일정기간 단계별 지급 등)해야 한다. • 자립정착금 사용과 관련된 지속적인 사전교육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자립전담요원의 적절한 지도와 개입이 필요하다.
5) 주거공간 지원의 확대 및 개선	• 자립지원시설(舊 자립생활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시설 아동청소년의 입소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 대학졸업 전 군입대 시 퇴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전역 후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

영역	내용
	• 청소년 시설(예, 쉼터) 퇴소 청소년들에게도 2~3년 정도의 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 퇴소 전 자립을 체험할 수 있는 중간 형태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취약 아동청소년들에게 현실적 수준의 전세자금 지원되어야 한다. • 전세주택 지원이 대학 졸업 시(만24세)까지도 가능해야 한다. • 취약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의무 비율 도입이 필요하다. • 저렴하면서도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는(예, 원룸 형태) 임대주택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 취약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세주택 서비스 체계(복잡한 계약과정, 거주지 변경에 따른 재신청 문제 등)가 개선되어야 한다. • 취약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 관련 정보(주택 정보, 신청 방법 등) 제공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 취약 아동청소년을 위한 부동산 계약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6) 법률, 의료 지원 강화	• 퇴소 후 일정 기간 동안 법률 정보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퇴소 후 취업 시까지는 의료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7) 친부모 관련 대응 강화	• 아동청소년의 친부모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부모의 양육책임 강화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 • 친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재형성하기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 퇴소 후 연고자(친부모 및 친인척)로부터의 피해가능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8) 자립준비 프로그램 체계 구축 및 운영	• 실질적인 자립교육 프로그램 메뉴얼이 확충되어야 한다. • 취약 아동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시부터 자립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 취약 아동청소년에게 목표와 비전을 심어주어 자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취약 아동청소년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 자립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욕구 파악이 중요하다.
9)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 소규모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쉼터 등 서비스 사각지대에 심리치료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심리정서적 문제해결을 위한 치료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게임중독이나 약물, 흡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 지적장애(경계선 지능 포함) 및 신체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성폭력, 성매매 등의 위협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영역	내용
10)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 강화	• 욕구과악 및 목표설정을 위한 진로탐색·진로발달검사,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의 진로설계서비스가 필요하다. •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11) 학업 지원 강화	•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학력(인가)형 특성화 대안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 • 검정고시 학원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 취약 아동청소년의 욕구(학원, 예체능교육, 자격증)에 맞는 교육 바우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장기 학습지원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1 학습이 제공되어야 한다. • 대학등록금 지원이 청소년시설(예, 쉼터) 청소년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 비진학 청소년에 특화된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개별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역사탐방, 유적지 여행, 박물관 및 도서관 견학 등)가 확대되어야 한다.
12) 사회기술 역량 함양	•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기술훈련(신체결절, 청소, 세탁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또래관계와 집단생활(예, 보이스카웃)을 통한 사회적 학습이 필요하다. • 사회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직장 상사 및 동료) 기본 예절 및 규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및 갈등상황 대처, 분노조절 등과 관련된 사회 기술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 1:1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생활 적응을 도와야 한다.
13) 경제교육 강화	• 단계별 경제교육(초등·중등·고등)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 저축, 가계부 작성, 은행업무(통장, 적금, 공과금 납부)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
14) 직업준비 및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	• 직업기술훈련 관련 정보가 수시로 제공되어야 한다. • 건전한 아르바이트 및 취업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창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창업자금지원과 창업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 취업 후 실직·전직 시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 직업체험, 훈련, 인턴십, 취업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취업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 대학 미진학 아동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시스템(조기 기술교육, 자격증 취득 등)이 필요하다. • 취약 아동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이 확대되고,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

2. 제2·3차 델파이 조사 결과

1) 자립지원 정책 강화

향후 취약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의견 중 자립지원 정책 강화와 관련된 의견에 대한 2차, 3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3차 델파이 조사에서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나 현장전문가들이 각 의견에 대해 합의해가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각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가 매우 높아, 자립지원 정책 강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관련법에 자립지원 규정 명시(4.55),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총괄 운영기관 설치(4.31), 자립지원 유관기관 간의 협력 강화(4.67),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4.74), 부처 내 기금 마련(4.67), 장기적 자립지원 정책 개발(4.78), 기업에서의 채용비율 의무화 및 세제혜택 등 일자리 창출 정책(4.07), 정책 홍보를 통한 일반인들의 자립지원 인식 제고(4.26), 자립지원 관련 연구의 활성화(4.39) 등에 관한 의견이 종합되었다.

자립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동의수준을 나타낸 것은 장기적 자립지원 정책 개발(4.78), 정부부처간의 유기적 협력(4.74), 자립지원 기관 간의 협력 강화(4.67)이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전문가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것은 기업 채용의무화, 홍보 등의 정책도 중요하기는 하나 이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체계적이고 장기적 관점 하의 정책 개발과 추진, 이를 위한 부처 간 및 관련기관 간의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제시하고 있다.

<표 4> 자립지원 정책 강화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M	SD	M	SD
아동청소년관련법에 자립지원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4.55	0.56	4.56	0.50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총괄 운영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4.21	0.96	4.31	0.54
자립지원 유관기관(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상담지원센터 등)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4.57	0.63	4.67	0.48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4.68	0.50	4.74	0.44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M	SD	M	SD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부처 내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4.57	0.68	4.67	0.51
체계적인 자립준비를 위한 장기적 자립지원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4.72	0.45	4.78	0.42
기업에서의 취약 아동청소년의 채용비용 의무화, 이에 따른 세제혜택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	4.18	1.02	4.07	0.89
자립지원 정책 홍보를 통한 일반인들의 자립지원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4.12	0.84	4.26	0.62
취약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4.43	0.65	4.39	0.53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후관리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의견들로는 자립지원과 관련된 통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4.37), 시설 퇴소 이후 ‘사례관리 의무화’ 법령 추가(3.33), 퇴소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네트워크 형성(4.24)이 나타났다. 취약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관련된 지원들을 통합적, 체계적,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성과, 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요구는 높은 수준이나 반면, ‘사례관리 의무화’를 법령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는 ‘보통이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후관리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M	SD	M	SD
자립지원과 관련된 통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4.34	0.64	4.37	0.52
시설 퇴소 이후, ‘사례관리 의무화’ 법령이 추가되어야 한다.	3.47	0.95	3.33	0.64
퇴소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4.12	0.76	4.24	0.55

3) 자립지원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립지원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여부도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에서는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대 및 충원(4.59), 자립전담요원의 업무집중화(4.43), 자립지원 실무자들의 급여 현실화(4.63)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립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인력확대 및 급여의 현실화 등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6〉 자립지원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M	SD	M	SD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진로 및 상담 전문가)의 확대 및 충원이 필요하다.	4.53	0.78	4.59	0.50
자립전담요원(아동양육시설)의 업무집중화가 필요하다.	4.22	0.97	4.43	0.54
자립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급여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4.54	0.74	4.63	0.49

4) 자립정착금 지원의 개선

자립정착금 지원의 개선에 대한 의견들 역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호유형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 차등화 해소(4.30), 자립정착금의 상향조정(4.52), 청소년 시설로의 자립정착금 확대(4.37), 아동발달계좌 사업 강화 및 확대를 위한 홍보와 후원자 발굴(4.56), 자립정착금 지급방법의 다양화(4.55), 자립정착금 사용에 대한 사전교육과 사후관리(4.57), 자립정착금 지급 시 자립전담요원의 적절한 지도와 개입(4.49)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각 의견에 대한 동의여부도 높았다.

이와 같이 자립정착금의 상향조정이나 이의 지급을 위한 사전 및 사후 지도 개입 등에 대해서는 모두 4.5이상의 수준의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으나, ‘보호유형에 따른

서비스 차등화 해소'와 '자립정착금의 쉼터 등의 청소년들에게 확대'와 같은 시설 간 차등 혹은 차등 해소에 대한 동의는 상대적으로 낮아 4.30, 4.37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전문가들에 따라 조금씩 나타나는 부분이다.

<표 7> 자립정착금 지원의 개선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M	SD	M	SD
보호유형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 차등화를 해소하여야 한다.	4.41	0.67	4.30	0.50
자립정착금을 현재수준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4.43	0.78	4.52	0.61
자립정착금 지원이 아동시설뿐 아니라 청소년 시설(예, 쉼터)의 청소년들에게도 확대되어야한다.	4.22	0.88	4.37	0.71
아동발달계좌(CDA) 사업 강화 및 확대를 위한 적극적 홍보와 후원자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4.41	0.72	4.56	0.54
자립정착금 지원 시,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지급방법을 다양화(일시지급, 일정기간 단계별 지급 등)해야 한다.	4.47	0.84	4.55	0.63
자립정착금 사용과 관련된 지속적인 사전교육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4.49	0.66	4.57	0.50
자립정착금 지급 시, 자립전담요원의 적절한 지도와 개입이 필요하다.	4.44	0.72	4.49	0.54

5) 주거공간 지원의 확대 및 개선

<표 8>를 살펴보면, 자립지원시설의 확대(4.54),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시설 아동청소년의 입소기간 연장(4.61), 군입대시의 퇴소 연장, 군 전역 후의 생계비 지원(4.44), 대학 졸업 시까지의 전세주택 지원(4.65), 청소년 시설 퇴소 청소년들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4.48), 자립 체험을 위한 중간 형태의 시설 및 프로그램(4.56), 현실적 수준의 전세자금 지원(4.61), 저렴하고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는 임대주택 제공 확대(4.61), 전세주택 서비스 체계의 개선(4.57), 주거지원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의 확충(4.52), 부동산 계약관련 교육(4.31)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주거공간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 도출과 각 의견에 대한 높은 동의정도는 취약 아동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있어 주거공간 문제가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주거공간 지원의 확대 및 개선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M	SD	M	SD
자립지원시설(舊 자립생활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4.32	0.87	4.54	0.66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시설 아동청소년의 입소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4.53	0.59	4.61	0.49
대학졸업 전 군입대 시 퇴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전역 후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	4.29	0.75	4.44	0.57
전세주택 지원이 대학 졸업 시(만24세)까지도 가능해야 한다.	4.52	0.72	4.65	0.48
청소년 시설(예, 쉼터) 퇴소 청소년들에게도 2~3년 정도의 임대 주택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4.21	0.91	4.48	0.67
퇴소 전 자립을 체험할 수 있는 중간 형태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4.47	0.72	4.56	0.50
취약 아동청소년들에게 현실적 수준의 전세자금 지원되어야 한다.	4.41	0.76	4.59	0.60
취약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의무 비율 도입이 필요하다.	4.29	0.83	4.61	0.53
저렴하면서도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는(예, 원룸 형태) 임대 주택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4.47	0.72	4.67	0.48
취약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세주택 서비스 체계(복잡한 계약 과정, 거주지 변경에 따른 재신청 문제 등)가 개선되어야 한다.	4.38	0.86	4.57	0.54
취약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 관련 정보(주택 정보, 신청 방법 등) 제공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4.40	0.72	4.52	0.50
취약 아동청소년을 위한 부동산 계약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4.19	0.82	4.31	0.51

6) 법률, 의료 지원 강화

<표 9> 법률, 의료 지원 강화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M	SD	M	SD
퇴소 후 일정 기간 동안 법률 정보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4.43	0.74	4.57	0.50
퇴소 후 취업 시까지는 의료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4.50	0.66	4.69	0.47

법률, 의료 지원 강화에 관한 의견들로는 퇴소 후 일정 기간 동안의 법률 정보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등의 지원(4.57), 취업 시까지의 의료지원 제공(4.69)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표 9〉). 법률, 의료 지원 부족은 취약 아동청소년의 자립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률, 의료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친부모 관련 대응 강화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친부모 관련 대응 강화와 관련하여 친부모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4.43), 친부모의 양육책임 강화 법제화(4.34), 친부모와의 긍정적 관계 재형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4.39), 퇴소 후 연고자로부터의 피해가능성에 대한 방안 마련(4.52)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각 의견에 대한 동의여부의 평균값이 높아, 현장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의 친부모와 관련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취약 아동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친부모의 양육책임 강화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아 이러한 책임강화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는 실무자들도 있으며, 이는 이들의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표 10〉 친부모 관련 대응 강화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M	SD	M	SD
아동청소년의 친부모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4.24	0.74	4.43	0.57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부모의 양육책임 강화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	4.06	0.96	4.34	0.70
친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재형성하기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4.35	0.66	4.39	0.53
퇴소 후 연고자(친부모 및 친인척)로부터의 피해가능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47	0.59	4.52	0.54

8) 자립준비 프로그램 체계 구축 및 운영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자립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확충(4.56), 초등학교 시부터의 자립준비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3.61), 목표와 비전 심어주기를 통한 자립에 대한 동기 부여(4.65), 자존감 향상 서비스(4.54), 개별적인 욕구 파악(4.61), 자립준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4.7)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개별적인 욕구 파악, 동기 향상, 자아존중감 향상 등이 포함된 자립준비에 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축과 운영 지원 대한 요구는 높게 나타난 반면, 초등학교 시부터 자립준비 프로그램 의무화는 다른 의견들보다 동의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자립준비 프로그램 체계 구축 및 운영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M	SD	M	SD
실질적인 자립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이 확충되어야 한다.	4.51	0.59	4.56	0.54
취약 아동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시부터 자립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3.78	1.02	3.61	0.79
취약 아동청소년에게 목표와 비전을 심어주어 자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4.59	0.60	4.65	0.48
취약 아동청소년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4.54	0.61	4.54	0.61
자립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욕구 파악이 중요하다.	4.58	0.55	4.61	0.49
각 대상의 특성이나 목표를 고려한 개별화된 자립준비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4.57	0.55	4.65	0.48
자립준비 프로그램 운영 시 재정적 지원(운영비, 교통비, 식비)이 필요하다.	4.63	0.57	4.70	0.46

9)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규모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쉼터 등 심리정서 서비스 사각지대에 심리치료서비스 지원의 확대(4.67), 심리정서적 문제해결을 위한 치료비 지원(4.69), 게임중독, 약물, 흡연에 대한 상담(4.48), 지적장애 및 신체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지원(4.61), 성폭력, 성매매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지원(4.59)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각 의견에 대한 동의여부도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 아동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심리정서적 지원이 전제되어야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12>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M	SD	M	SD
소규모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쉼터 등 서비스 사각지대에 심리치료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4.49	0.68	4.67	0.48
심리정서적 문제해결을 위한 치료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4.57	0.63	4.69	0.47
게임중독이나 약물, 흡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4.46	0.53	4.48	0.50
지적장애(경계선 지능 포함) 및 신체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4.46	0.68	4.61	0.49
성폭력, 성매매 등의 위협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4.62	0.55	4.59	0.53

10)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 강화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욕구과약 및 목표설정을 위한 진로탐색, 진로발달검사,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의 진로설계서비스가 필요하다(4.61),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4.69)는 의견이 나타났다. 각 의견에 대한 동의수준 역시 매우 높아 체계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가 확충되어야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 강화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M	SD	M	SD
욕구과약 및 목표설정을 위한 진로탐색·진로발달검사,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의 진로설계서비스가 필요하다.	4.59	0.60	4.61	0.49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4.56	0.68	4.69	0.47

11) 학업 지원 강화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학력(인가)형 특성화 대안학교 설립(3.89), 검정고시 학원과의 연계 강화(3.91), 취약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교육 바우처 마련(4.61), 비진학 청소년에 특화된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4.39), 장기 학습지원 멘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1:1학습 제공(4.3), 대학등록금 지원의 확대(4.43)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타났다. 학업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취약 아동청소년의 욕구(학원, 예체능교육, 자격증)에 맞는 교육 바우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가장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14> 학업 지원 강화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M	SD	M	SD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학력(인가)형 특성화 대안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	3.93	0.92	3.89	0.74
검정고시 학원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3.99	0.92	3.91	0.81
취약 아동청소년의 욕구(학원, 예체능교육, 자격증)에 맞는 교육 바우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4.50	0.72	4.61	0.49
비진학 청소년에 특화된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35	0.66	4.39	0.53
장기 학습지원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1 학습이 제공되어야 한다.	4.21	0.80	4.30	0.57
대학등록금 지원이 청소년시설(예, 쉼터) 청소년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4.38	0.77	4.43	0.63
개별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역사탐방, 유적지 여행, 박물관 및 도서관 견학 등)가 확대되어야 한다.	4.00	0.90	3.83	0.87

12) 사회기술 역량 강화

〈표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기술 역량의 강화가 취약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기술훈련의 체계적 제공(4.46), 또래관계와 집단생활을 통한 사회적 학습(4.20), 사회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 기본 예절 및 규범에 대한 교육(4.52), 긍정적 대

인관계 형성 및 갈등상황 대처, 분노조절 등과 관련된 사회기술훈련 제공(4.67), 1:1 멘토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생활 적응 조력(4.24)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각 의견들은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에 있어 생활기술, 대인관계의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15> 사회기술 역량 함양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M	SD	M	SD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기술훈련(신체청결, 청소, 세탁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31	0.72	4.46	0.57
또래관계와 집단생활(예, 보이스카웃)을 통한 사회적 학습이 필요하다.	4.04	0.70	4.20	0.61
사회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직장 상사 및 동료) 기본예절 및 규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4.37	0.64	4.52	0.50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및 갈등상황 대처, 분노조절 등과 관련된 사회기술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4.65	0.54	4.67	0.48
1:1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생활 적응을 도와야 한다.	4.09	0.79	4.24	0.61

13) 경제교육 강화

자립 이후에는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관리 역시 중요한 생활의 일부분이 되므로, 경제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의 요구 또한 제시되었다. <표 16>에 나타나듯이, 현장전문가들은 단계별 경제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4.44), 저축, 가계부 작성, 은행업무 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4.46)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경제교육 강화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M	SD	M	SD
단계별 경제교육(초등·중등·고등)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4.41	0.74	4.44	0.50
저축, 가계부 작성, 은행업무(통장, 적금, 공과금 납부)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	4.46	0.66	4.46	0.50

14) 직업준비 및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

취약 아동청소년이 자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마련해야하므로 직업준비 및 취업준비 역시 취약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나타났다. <표 17>에 나타나듯이 직업기술훈련 관련 정보 제공(4.54), 건전한 아르바이트 및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4.52), 창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창업지원(3.76), 취업 후 실직·전직 시 재취업을 위한 서비스 제공(4.24), 직업체험, 훈련, 인턴십, 취업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취업지원 시스템(4.58), 대학 미진학 아동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시스템(4.67), 직업훈련시설의 확대와 예산 증액(4.69)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취약 아동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이 확대되고,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대학 미진학 아동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높은 동의수준이 나타나, 취약 아동청소년이 자립을 위해서는 직업훈련의 강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직업준비 및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

내 용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M	SD	M	SD
직업기술훈련 관련 정보가 수시로 제공되어야 한다.	4.52	0.56	4.54	0.50
건전한 아르바이트 및 취업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4.45	0.53	4.52	0.50
창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창업자금지원과 창업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4.10	0.80	3.76	0.75
취업 후 실직·전직 시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4.33	0.66	4.24	0.58
직업체험, 훈련, 인턴십, 취업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취업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4.54	0.61	4.58	0.50
대학 미진학 아동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시스템(조기 기술교육, 자격증 취득 등)이 필요하다.	4.69	0.47	4.67	0.51
취약 아동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이 확대되고,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	4.60	0.65	4.69	0.47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총 163명의 학계 및 현장(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쉼터 및 대안 학교)의 자립관련 전문가들에게 ‘취약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구한 델파이 조사에서 3차에 걸쳐 최종 56명으로부터의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이는 총 14개 항목 75개 문항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14개의 항목은 1)자립지원 정책 강화, 2)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후관리, 3)자립지원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4)자립정착금 지원의 개선, 5)주거공간 지원의 확대 및 강화, 6)법률 및 의료지원 강화, 7)친부모 관련 대응의 강화, 8)자립준비 프로그램 체계 구축 및 운영, 9)심리정서적 지원의 강화, 10)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의 강화, 11)학업지원 강화, 12)사회기술 역량 함양, 13)경제교육의 강화, 14)직업 준비 및 취업지원 시스템의 강화이었다.

본 델파이 조사를 통한 전문가 의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75개의 문항에 대해 대부분 5점 척도의 4점 이상의 동의를 이루어져 전문가들은 그들의 소속이 어디인가와 관계없이 취약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에 대해 높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이는 비록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 자립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디딤씨앗통장, 주거지원 등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나 관련 실무자나 학자들은 이러한 정책적 토대나 서비스 내용이 여전히 극히 제한적이며, 실상 필요에 비해 제공되고 있는 정책 및 서비스 내용도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욕구가 커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실제 이를 반영하듯 몇 개의 문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4.5이상의 매우 높은 동의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도출된 14개의 항목을 나누어 보면 크게 정책적 내용과 구체적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책적인 영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립지원 정책강화(아동청소년관련 법 명시, 총괄 운영기관 설치,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부처 내 기금 마련, 기업의 일자리 제공에 따른 세제 혜택 등),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후관리 강화, 자립지원 실무자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자립정착금 지원의 개선(대상 확대, 지급방법 다양화, 사전 및 사후 교육 등), 주거공간 지원 확대와 개선, 법률 및 의료 지원 강화, 친부모 관련 대응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도 가장 높은 동의수준을

나타낸 문항으로는 ‘장기적 자립지원 정책 개발’, ‘정부부처간의 유기적 협력’, ‘자립지원 유관기관 간의 협력 강화’, ‘자립지원을 위한 부처 내 기금 마련’, ‘아동청소년관련 법에 자립지원 규정 명시’등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무자들과 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현장에서의 자립지원 노력 이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범부처 차원으로 협력하여 정책 및 서비스, 기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해야 하는 기본문제가 가장 중요하며, 또한 이것조차도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시사된다.

셋째,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중요한 자립지원 서비스 관련 내용으로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체계적 구축 및 운영(매뉴얼 확충, 동기부여, 개별적 욕구파악 등),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심리치료서비스 지원 확대, 치료비 지원, 게임중독 및 약물 등의 상담, 지적장애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의 강화, 학업지원의 강화(대안학교 설립, 교육바우처, 장기 학습지원 멘토 프로그램 등), 사회기술 역량 함양(일상생활기술훈련의 체계적 제공, 대인관계 및 예절, 규범에 대한 교육, 분노조절 등의 사회기술 훈련 제공 등), 경제교육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영역들은 이미 기존 연구들에서도 제안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박은선, 2004; 신혜령 외, 2008), 심리정서적 지원, 진로 관련 서비스 강화, 학업지원, 사회기술교육 등이 필요한 서비스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심리치료 서비스의 확대 및 치료비 적극 지원 등의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는 자아존중감이 시설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은미·장신재, 2009)와 연결되는 결과로 심리정서적 지원이 자립지원에 있어 중요도가 높은 영역임을 의미한다. 또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진로관련 서비스 강화’ 등에 대한 동의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진로에 대한 의식, 태도가 자립 준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박은선, 2004; 손혜옥 외, 2008; 황미정, 2009)와 일치된다. 즉, 물질적, 학업적 지원 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심리정서적 지원과 진로관련 지원이 강화되지 않고는 이후의 물질적 지원을 통한 자립지원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더 중요한 영역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넷째, 의견은 제시되었으나 동의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영역으로는 시설 퇴소 후 ‘사레관리 의무화’ 법령의 추가(3.47), 친부모 양육책임의 강화(4.06), 초등학교 시부터의 자립준비 프로그램 의무화(3.78),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대안학교의

설립(3.93), 검정고시 학원과의 연계강화(3.99), 또래관계와 집단생활(예, 보이스카웃)을 통한 사회적 학습 필요(4.04) 등이다. 이러한 항목을 살펴보면, 이 영역의 서비스는 실행 면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거나, 혹은 이미 유사한 기관과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동의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많은 전문가들이 자립지원과 관련된 정책, 서비스가 장기적 관점으로 제시되고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높은 중요성이 있다고 동의한 의결들은 단회적이거나 단기적인 프로젝트성 사업에 의한 지원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예산 및 정책, 서비스 지원에 의해 각각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자립지원과 관련되어 경제, 주거, 의료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생활기술, 사회기술 및 심리정서적 지원과 교육적 지원이 제공되고, 스스로 자신의 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계획적으로 받음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이들 청소년들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에도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취약성이 있다. 첫째, 매우 기본적인 문제로 ‘취약 아동청소년’의 개념적 정의 자체가 매우 명확하거나 대중적인 용어가 아니며, 몇몇 연구와 정책에서 사용된 정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환경적, 정서적 취약성으로 인해 자립에 어려움이 시사되는 청소년들을 포괄하여 ‘취약 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그들의 자립지원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려고 한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취약성으로는 자립지원 관련 학계 연구자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델파이 대상 전문가가 현장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는 좋은 구성일 수 있으나,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도출하는 데는 다소 제한점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델파이 2차 조사 및 3차 조사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동의수준이 나타나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에 있어 우선순위의 변별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구현되어야 할 때만 청소년의 자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함의를 주지만 서비스 공급자의 입장에서 우선적인 서비스와 과정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항목들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조력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강현아 · 신혜령 · 박은미(2009). 시설 퇴소청소년의 성인전환 단계에 따른 자립 및 사회적응 현황. *한국아동복지학*, 제30권, pp. 41-67.
- 권해수 · 조규필 · 김범구 · 허진석 · 윤현선(2008). 위기청소년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두드림존 프로그램 특성화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미숙(2009). 일본의 니트(NEET) 현황과 자립지원정책에 관한 고찰.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4호, pp. 173-199.
- 노승용(2006). 델파이 기법: 전문적 통찰로 미래예측하기. *국토*, 2006년 9월호, pp. 53-62.
- 노충래(2001). 한국 및 미국의 요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분석. *한국 아동복지학회*, 제14회 학술대회.
- 박은미 · 장신재(2009). 시설보호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제47권 제4호, pp. 111-119.
- 박은선(2004).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일반주의 실천 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실천*, 제4권, pp. 85-112.
- 서영인(2008). 대학 경쟁력 평가를 위한 평가준거 및 지표의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혜옥 · 최외선 · 이미옥(2008). 시설청소년의 자립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가족복지학*, 제13권 제4호, pp. 185-203.
- 신혜령(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시설청소년과 보육사들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11권, pp. 90-124.
- 신혜령 · 박은미 · 강현아 · 이현주 · 한규제 · 김경희(2008).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 원지영(2008). 아동복지시스템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 현황과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7호, pp. 79-107.
- 이혜은 · 최재성(2008).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경제적 안정성, 거주 안정성,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2호, pp. 209-233.
- 정익중(2007). 미국 요보호아동의 퇴소후 자립관련 프로그램과 시사점. *사회과학연구*, 제13권, pp. 35-52.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미정(2009). 빈곤청소년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적 변인, 환경적 변인, 진로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asey Family Program(2001). <http://www.caseylifeskills.org/>에서 검색.
- Cook, R. J.(1986). *Independent Living Service for Youth in Substitute Care, Prepared for Administration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ockville, MD: Westat, INC.
- Mallucio, A., Krieger, R. & Pine, B. A.(1990). Assessing skills for interdependent living. In A. N. Maluccio, R. Kreiger, & B. A. Pine(eds.), *Preparing adolescents for life after foster care*(pp. 72-89).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Nollan, K. A. M., Wolf, D., Ansell, J., Burns, L., Barr, W., Copeland, & Paddock, G.(2000). Ready or not: Assessing Youths Preparedness for Independent Living. *Child Welfare, Vol. 79 No. 2*, pp. 159-176.
- Pasztor, E. M., Clarren, J., Timmberlake, E. M., & Bayless, L.(1986). Stepping Out Foster Care into Independent Living. *Children Today, Vol. 3*, pp. 32-35.

ABSTRACT

Independent Living Policies and Social Services for Disadvantaged Youth : A Delphi Study

Bae, Joo-Mi* · Kim, Young-Hwa* · Kim, Bum-Goo* · Chung, Ick-Joong**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both the types of policies and social services needed to ensure the ability of disadvantaged youth to lead independent lives by means of Delphi research. Seventy two experts from residential care, group-homes, foster care, shelters, local counseling centers and alternative schools provided detailed feedback on policies, services and measures they regard as necessary to enable and support successful independent living on the part of disadvantaged youth. These results produced a number of important suggestions; 1) there is a clear need to strengthen the policy on adolescents as it relates to independent living, 2)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database system which includes information on self-reliance, 3) enhancing the provision of follow-up services is required, 4) there is a need to develop the expertise of care givers, 5) improvements need to be made to the independent living financial support system, 6) more residential facilities need to be made available, 7) affordable legal and medical support is required, 8) help and support in dealing with the problems with biological parents is needed, 9) a systematic self-reliance preparation programs need to be established, 10) any initiatives in this area need also to provide intensive psychological intervention services, 11) a comprehensive system for career development for professionals in this field needs to be put into place, 12) disadvantaged youth require the provision of systematic support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academic and overall educational outcomes, 13) support needs to be given to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their social skills, 14) training in their money management skills needs to be provide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independent living, self-sufficient living, disadvantaged youth,
delphi research

투고일 : 4월 27일, 심사일 : 6월 16일, 심사완료일 : 6월 24일

*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 EWha Woman University